

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

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0.2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2 재검토기한
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2015. 8. 20.>

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10.2 재검토기한</p> <p><u>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함.</u></p>	<p>10.2 재검토기한</p> <p><u>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